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 일시 | 2016. 6. 23.(목) 14:00~16:00
- 장소 | 나인트리컨벤션 광화문
(Grand Ballroom 2)
- 주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개요

주 제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일 시 : 2016. 6. 23.(목) 14:00~16:00

장 소 : 나인트리컨벤션 광화문 (Grand Ballroom 2)

주 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프로그램

- 13:30~14:00 **등록**

- 14:00~14:10 **개회식**
개회사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14:10~15:50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사회자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발표자 :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토론자 : **김유찬** 흥익대학교 교수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1과 과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
(가나다순)

- 15:50~16: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16:00~ **폐회**



목차

I. 서론	1
II. 외국인투자 유입 동향	3
III.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와 조세지원 실적	7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7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실적	11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특징, 장기적 발전방향	17
IV.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 현황	22
1.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	22
2.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 실적과 주요 지원분야	26
3. 첨단 기술에 대한 국내 다른 조세지원제도	31
4. 주요 외국의 유사한 제도	34
V.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37
1.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문제점	37
2.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개편방안	42
참고문헌	44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안 종 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서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1조의7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비판이 제기됨
 - 이 감면제도는 고도기술사업분야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 대규모 외국인투자, 특정 지역에서의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
 - 내·외국인을 구분하여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서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효과가 있음
 - 투자에 있어 국경의 의미가 크게 퇴색된 세계화 사회에서 내국인을 배제하고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내국기업에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다른 국가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여 외국인에게만 제공하는 투자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음
 - 투자규모에 초점을 맞춘 지원으로서 고용 등 사회적으로 보다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요소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에 기획재정부의 용역사업으로 외국인 투자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하였음(안종석·정재호·최기호, 2014)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가 지원목적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함

- 2015년에는 2014년의 심층평가에서 제시된 장기발전방향을 토대로 단기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 일부가 입법화됨(안종석, 2015)
 - 고용친화적 외국인투자 유도를 위해 조세감면 한도에서 고용기준 한도를 확대 하였으며,
 - 내국인이 우회투자를 통해 조세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조세지원대상 외투기업의 내국인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였음

- 본고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일련의 노력의 일환으로, 고도 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이하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 실적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액의 68.5%(2014년, 증자감면 제외)를 차지하는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이 제도의 개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 제도는 1984년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대상을 대폭 축소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하였음
 - 이후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그 외에 큰 변화 없이 제도가 유지되었음

- 본 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II장에서 외국인투자 유입 동향을 살펴보고,
 - 제III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제도의 내용과, 지원 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봄
 - 제IV장에서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에 초점을 맞춰, 제도의 내용과 운영현황, 지원실적, 국내 다른 유사한 제도와의 비교, 다른 국가의 유사한 제도와의 비교 등을 살펴봄
 - 제V장에서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함

II. 외국인투자 유입 동향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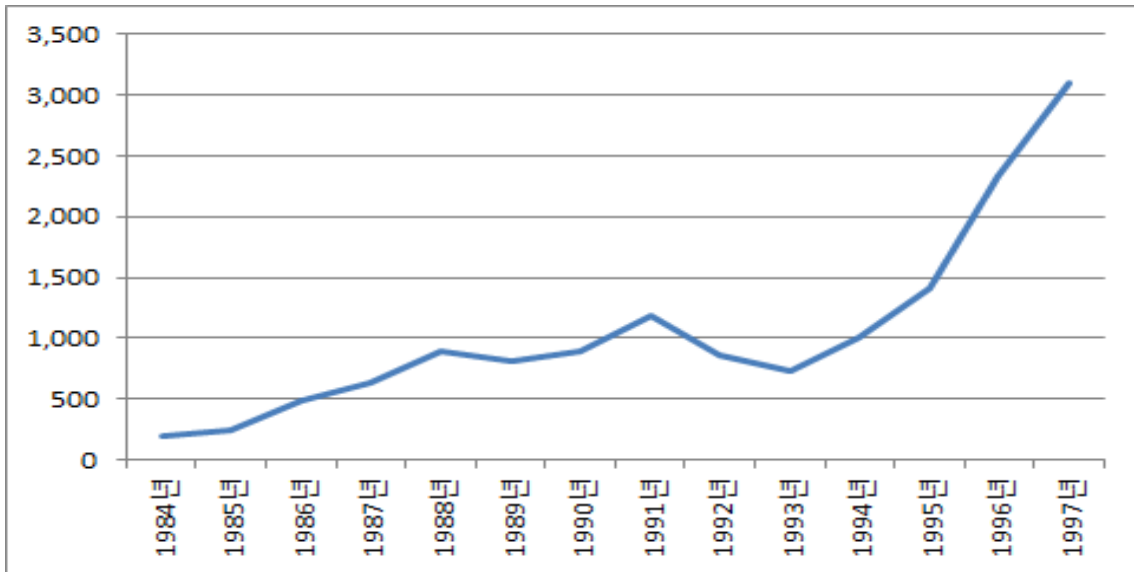
- [그림 II-1]과 [그림 II-2]는 1984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액을 1997년 이전과 1998년 이후로 구분하여, 도착 기준으로 정리한 것임
- 1984~1997년: 외국인투자 허용업종을 열거하던 방식에서 금지업종을 열거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변경하고 외국인투자 허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 조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제한된 범위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만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함
 - 도소매·금융부문 등 일부 업종과 M&A 형태의 투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장을 개방함
 - 1996년의 OECD 가입을 전후로 국제조세 등 각종 투자 관련 규정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함
- 1998~2015년: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소매·금융, M&A 등 미개방 분야를 대폭 개방함
 - 1984년 외국인투자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한 이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하였으나,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로 전환됨
 -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외국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외국인투자 지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원기간을 확대함
 - 그 후 다양한 특정지역에 대한 감면제도가 도입·확대되었음
- 1984~1997년에는 점진적으로 국내 투자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특히 1994~1997년에는 OECD 가입을 준비하면서 국내 시장 개방 속도를 가속화하고 국제조세제도 등 각종 국제투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제도와 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외국인투자도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함
 - 1984년에 2억 달러 수준이었던 연간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1991년에 10억 달러를 넘어서고 1997년에는 31억 달러에 도달함

1) 안종석(2015) pp.8~11의 내용을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옮긴 것임

- 1989~1990년, 1993~1994년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이 -0.4~0%로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였음

[그림 II-19] 1984~1997년 외국인투자 유입액(도착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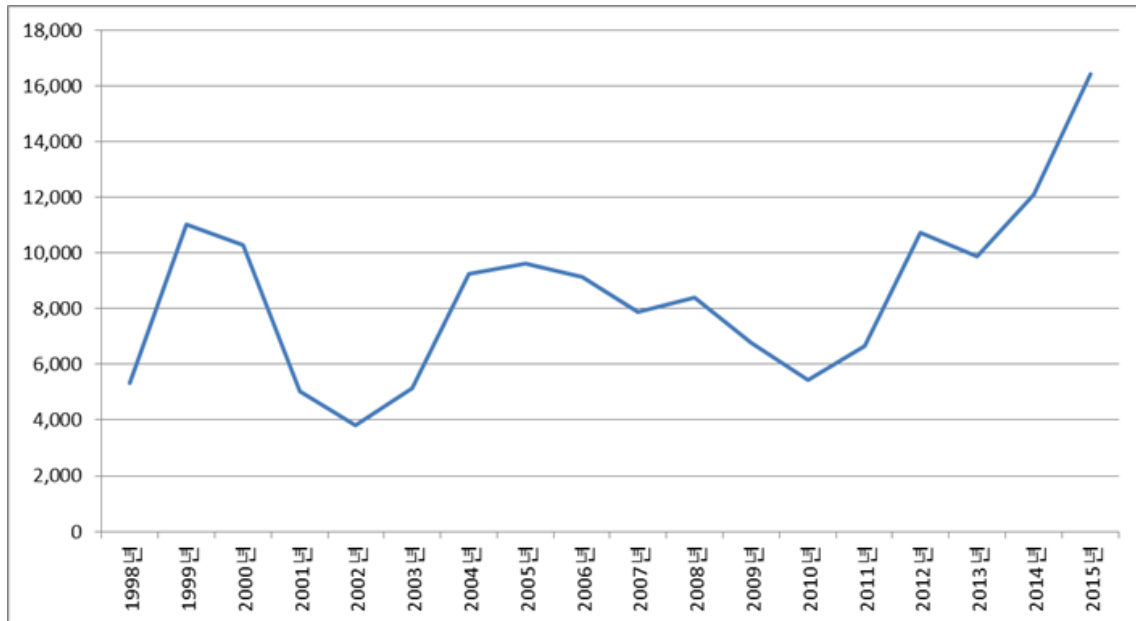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안중석(2015) p.9에서 재인용

- 1998년 이후에는 그동안 억제되었던 도소매, 금융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대와 M&A 형태의 투자증대에 힘입어 연간 유입액이 최대 100억 달러를 넘는 수준까지 크게 확대됨
 -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는 11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가 유입되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01~2003년에는 40~5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04~2008년에는 80~100억 달러로 다시 증가함
 - 2001~2003년은 실질 GDP 증가율이 -0.1~0.1% 였음
 - 2009~2010년에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국내 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다시 감소하였으며, 이후 2012년에 100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됨

- 2013년에도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4년과 2015년에 다시 증가하여, 2015년의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164억 달러(2012년 107억 달러의 153%)가 되었음

[그림 II-20] 1998~2015년 외국인투자 유입액(도착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정보,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안중석(2015) p.10의 자료를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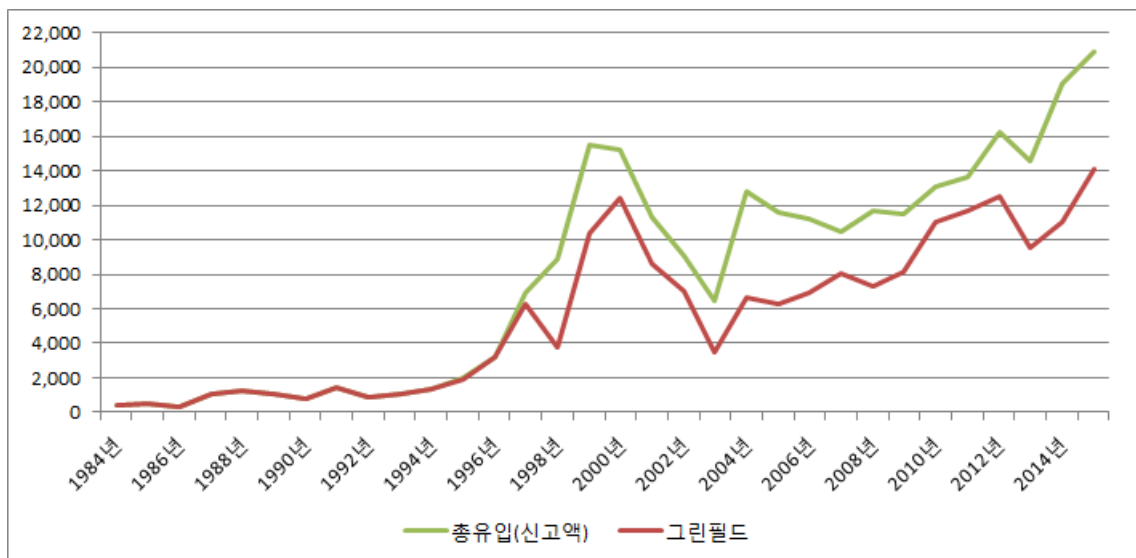
- 구간 전체로 볼 때 1998~2015년 구간은 이전의 구간에 비해 외국인투자 규모가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구간 내의 연도별 변화만 보면 2014년까지 16년의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음
 - 2015년에는 외국인투자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이 장기적인 추세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음
- 1998년 이후에 외국인투자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된 이유 중의 하나로 M&A형 투자의 허용을 들 수 있음
 - 1998년부터 M&A형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허용되어 이듬해인 1999년에는 총 외국인투자 신고액의 67%를 M&A형 외국인투자가 차지하였으며, 1998~2015년 전체 유입액(신고 기준)의 31.8%를 M&A형이 차지하였음

- [그림 II-3]에서는 신고액 기준으로 총유입액과 그린필드형 외국인투자의 연도별 유입 추이를 정리하였는데, 총유입액과 그린필드형의 차이가 M&A형 투자임

○ 조세지원은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증대시키는 그린필드형 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림 II-21] 1984~2015년 외국인투자 유입액(신고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정보, <http://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안종석(2015) p.11의 자료 업데이트

III.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와 조세지원 실적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²⁾

-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되어 있음³⁾
 -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 등으로부터 5년 이상의 차관을 도입한 것으로서,
 -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함
 - 외국인 지분 비율 10% 이상,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기업도시 입주기업
 -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2) 안종석(2015) pp.3~6의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옮긴 것임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기간을 기준으로 7년형과 5년형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감면항목별, 업종별로 감면요건과 감면 기간이 다름
 - 7년형은 5년간 세액의 100%, 2년간 50%를 감면함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감면대상 중 7년형이 아닌 경우에는 5년형이 적용됨 : 3년 100%, 2년 50%
- 감면이 허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보면, 7년형 중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 서비스업은 세분된 감면대상 업종이 고시됨
 - 그 외 7년형이 적용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과, 특정 지역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조업 등 광범위한 업종이 감면대상에 포함됨
 - 제조업, 시스템 통합·관리, 자료처리, 관광·휴양업, 국제회의·청소년 수련시설 등, 물류업, SOC, R&D
 - 5년형의 경우에는 대상지역에 따라 감면대상 업종이 상이함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경우 제조업과 물류업만을 대상으로 조세지원을 제공하는데 비해,
 - 기업도시 개발지역은 R&D, 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사업지역은 엔지니어링, 시스템 통합·관리, 관광·휴양업, 국제회의·청소년 수련시설, 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 감면대상 업종의 감면허용 기준(투자규모)도 지원대상 항목과 업종에 따라 상이함
 - 예를 들어, 7년형인 개별형 투자지역의 경우에는 제조업은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은 2천만 달러, 물류업 1천만 달러, R&D는 2백만 달러 이상인데,
 - 5년형의 경우에는 제조업 1천만 달러, 관광업 1천만 달러, 물류업 5백만 달러, R&D 1백만 달러의 기준이 적용됨
 -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규모와 총사업비, 외국인투자 비율의 조건이 부여됨

〈표 III-1〉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조특법 제121조의 2)

조세감면 대상	감면요건	조세감면 방법	
		대상세목	감면기간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 업	○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국제: 법인세, 소득세 ○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 7년간 감면 (외투비율 만큼) - 5년 100%, 2년 50%
○ 개별형 투자지역 기업 ○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제조업, 시스템 통합·관리, 자료처리 등: 3천만 달러 ○ 관광·휴양업, 국제회의·청소년 수련시설 등: 2천만달러 ○ 물류업, SOC: 1천만달러 ○ R&D: 2백만달러 ○ 공동사업: 3천만달러		
○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제조업: 1천만달러 ○ 물류업: 5백만달러		○ 5년간 감면 (외투비율 만큼) - 3년 100%, 2년 50%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 제조업: 1천만달러 ○ 물류업: 5백만달러 ○ R&D: 2백만달러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 제조업, 엔지니어링, 시스템 통합·관리 등: 1천만달러 ○ 관광·휴양업, 국제회의·청소년 수련시설 등: 1천만달러 ○ 물류업, 의료기관: 5백만달러 ○ R&D: 1백만달러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	○ 투자금액 3천만달러이상 ○ 외투비율 50%이상 ○ 총사업비 5억불 이상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 투자금액 1천만달러이상 ○ 외투 50%이상 ○ 총사업비 1억달러 이상		

자료: KOTRA, 「2015 외국인투자 가이드」,

(http://www.investkorea.org/kr/foreigner/invest.do, 2016.6.8. 접속)

-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 부분만 감면대상이 되며, 감면한도가 있음
 - 7년형은 감면기간 동안 총감면액이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50%에 고용기준 한도를 더한 금액 이내로 제한되며,
 - 5년형은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40%에 고용기준 한도를 더한 금액이 한도가 됨
 - 고용기준 한도는 상시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의 경우에는 1천 5백만원,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등의 졸업생은 2천만원이 적용됨
 - 고용기준 한도는 7년형의 경우 외국인투자 누계액의 40%, 5년형은 30%까지 인정됨

-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투자를 하는 외국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직·간접 소유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외국인 투자금액 중 내국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로 보지 않음
 - 이는 내국인이 외국기업을 통해 국내에 우회 투자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무장관과 협의를 거쳐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함

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실적⁴⁾

가. 조세지원 규모

□ <표 III-2>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에 나타난 1991년 이후 각 연도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실적을 세목별로 정리하였음

○ 관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자료는 1999년 자료부터 공개됨

<표 III-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실적¹⁾

(단위: 억원)

	소득·법인세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계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계
1991	0	338	338				
1992	0	340	340				
1993	0	361	361				
1994	0	336	336				
1995	0	470	470				
1996	0	525	525				
1997	0	401	401				
1998	0	276	276				
1999	0	455	566	0	192	0	192
2000	0	1,386	1,386	653	518	0	1,171
2001	0	2,414	2,414	175	288	0	463
2002	0	2,009	2,009	211	231	0	442
2003	0	1,798	1,798	137	254	0	391
2004	0	3,490	3,490	121	1,085	2	1,208
2005	0	5,446	5,446	315	579	0	894
2006	0	3,661	3,661	233	340	0	573
2007	0	4,024	4,024	477	756	0	1,233
2008	3	5,167	5,170	238	0	0	238
2009	2	7,293	7,295	383	0	0	383
2010	4	5,765	5,769	118	142	0	260
2011	1	8,198	8,199	202	327	0	529
2012	2	4,383	4,385	441	569	0	1,010
2013	1	3,616	3,617	255	242	0	497
2014	0.40	2,365	2,365	258	195	0	453
2015	0.04	1,524	1,524	94	77	0	171
2016	0.04	1,578	1,578	97	81	0	178

주: 1) 2015년, 2016년은 추정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및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 p. 83의 자료를 업데이트 함

4) 안종석(2015) pp.12~18의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 대부분의 감면은 법인세 감면으로서, 최근 5년치(2010~2014)를 보면 법인세 감면액은 연평균 4,865억원이고, 소득세 감면액은 1억 7천만원, 관세 감면액은 255억원,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295억원임
 - 소득세 감면액이 적은 것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추가하여 감면되는 것으로 부수적인 혜택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음에서는 법인세 감면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실적을 검토함

- 법인세 감면액을 보면, 2008~2012년에는 연간감면액이 4천억~8천억원 규모였는데, 2012년부터 계속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2012년은 4,383억원으로 2011년 8,198억원의 53% 수준이었으며, 2013년은 3,616억원으로 2012년의 82.5%, 2014년은 2,365억원으로 2013년의 65%에 그쳤음
 - 2015년과 2015년에는 1,500억원 내외, 2014년의 63%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 <표 III-3>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실적(이하 '외투감면')과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이 받고 있는 법인세 감면 실적(이하 '일반감면')을 비교하였음

- 먼저 기업의 수를 보면 외투감면을 받은 기업이 적게는 116개(2014년)에서 많게는 163개(2011년)로 법인세 신고를 한 외국인투자법인 6,542(2008년)~8,002개(2014년)의 1.45(2014년)~2.21(2008년)%를 차지함
 - 법인세 신고를 한 외투법인의 수는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외투 감면을 받은 기업의 수는 2011년 163개를 정점으로 계속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2008년에는 외투감면을 받은 기업이 총외투법인의 2%를 넘었으나 이후 1%대로 낮아져 2014년에는 1.45%가 됨(<표 III-3>의 D/A 참조)

- 공제감면액의 규모를 보면 2014년의 경우 외투감면액은 2,360억원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이 받은 총공제감면액 7,640억원의 30.9%를 차지함(〈표 III-3〉의 E/C 참조)
 - 2009~2011년에 45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상당히 낮아짐
- 외국인투자법인 총산출세액에서 외투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 2013년 5.9%, 2014년 4.2%였음(〈표 III-3〉의 E/B 참조)
 - 2009년 10.4%, 2010, 2011년에 9%대였던 것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음

〈표 III-3〉 외국인투자법인의 조세감면액 비교

(단위: 개, 10억원, %)

	법인세 신고 외투법인			외투감면 법인		D/A	E/B	E/C
	법인수 (A)	산출 세액 (B)	공제 감면액 (C)	법인수 (D)	공제 감면액 (E)			
2008	6,542	7,432	1,314	146	517	2.21	7.0	39.3
2009	7,545	7,039	1,554	137	729	1.83	10.4	46.9
2010	7,682	6,008	1,268	135	567	1.74	9.4	44.7
2011	7,624	8,770	1,896	163	820	2.10	9.3	43.2
2012	7,699	8,755	1,411	141	438	1.79	5.0	31.1
2013	7,931	6,082	885	134	361	1.69	5.9	40.8
2014	8,002	5,562	764	116	236	1.45	4.2	30.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안종석(2015) p.14의 표를 업데이트한 것임

- 이 표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줌
 -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가 적용되는 외투감면의 규모가 외국인 투자기업이 받는 감면 전체의 31~47%로 상당히 큼
 - 둘째, 이렇게 큰 규모의 감면이 2% 내외의 소수의 기업에게만 적용됨
 - 셋째, 외투감면제도는 계속 확충되었으나 감면 대상 기업의 비중과 감면혜택의 규모는 빠른 속도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나. 감면항목별 감면규모

- <표 III-4>는 외투감면액을 감면항목별로 정리한 것임
 - 2014년의 실적을 보면 증자에 대한 감면이 23.9%를 차지하였고, 신규투자자에 대한 감면이 74.1%를 차지하였음
 - 신규투자의 항목별 구분을 보면,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서비스업에 대한 감면이 총 감면액의 52.1%를 차지하였고,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단지형)에 대한 감면이 22.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이 1.8%를 차지함

〈표 III -4〉 외국인투자법인 감면 현황(대상별)1), 2)

(단위 : 백만원, 개, %)

구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수	감면 금액	법인수	감면 금액	법인수	감면 금액	법인수	감면 금액	법인수	감면 금액	법인수	감면 금액	법인수	감면 금액	평균감면	비중
감면법인	151	544,614	151	402,233	137	729,325	163	819,817	141	438,827	134	361,605	116	236,499	2,039	100.0
고도기술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감면	50	298,911	76	163,119	72	209,666	96	174,321	75	140,827	71	115,629	63	123,318	1,957	52.1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감면	5	21,824	10	22,303	21	161,146	29	149,387	30	69,312	29	42,439	31	52,413	1,691	22.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감면	1	10	1	74	2	1,653	u	17,849	u	8,572	3	821	u	4,159	-	1.8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	-	-	-	-	-	-	-	-	-	-	-	-	-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	-	-	-	-	-	-	-	-	-	-	-	-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감면			-	-	-	-	u	336	-	-	-	-	-	-	-	-
기업도시개발구역내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	-	-	-	-	-	-	-	-	-	-	-	-	-
기타 외국인 투자유치 감면			-	-	1	11	6	2,471	u	2,097	u	420	u	113	-	0.05
외국인투자기업 증가 감면	95	223,869	64	216,737	41	356,849	29	475,453	28	217,570	27	202,296	18	56,496	3,139	23.9

주: 1) 해당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인 투자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용임
 2) 외국인투자법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으로 국세청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임
 3) 중복감면법인 1개 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인종석(2015) p.17의 자료를 업데이트 함

- 증자에 대한 감면을 제외하고 보면,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서비스업에 대한 감면이 68.5%,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감면이 29.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감면이 2.3%를 차지함
 - 다른 해에도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감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이 아주 적은 수준으로 있음
 - 그 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기구 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 입주기업,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 등 다른 항목의 실적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임
- <표 III-5>에서는 2005~2013년에 감면승인을 받은 기업의 구성을 정리하였는데, 매년 2천~3천7백건의 외국인투자 신고 중 외투법인 조세감면 승인 건수는 32~64개로 1~2%를 차지하였음

〈표 III-4〉 외국인투자 감면 승인받은 기업의 수와 감면항목별 구성

(단위: 개, %)

	외국인 투자 신고건수 (A)	감면 기업		감면기업의 항목별 구성					소계
		기업수 (B)	비율 (B/A)	고도, 산지	외투, 개별	외투, 단지	경제 자유	항목 미상	
2005	3,669	64	1.7	73.4	21.9	1.6	3.1	0.0	100.0
2006	3,108	56	1.8	75.0	10.7	8.9	1.8	3.6	100.0
2007	3,560	38	1.1	68.4	18.4	5.3	7.9	0.0	100.0
2008	3,745	42	1.1	76.2	7.1	4.8	11.9	0.0	100.0
2009	3,131	42	1.3	69.0	19.0	4.8	7.1	0.0	100.0
2010	3,110	32	1.0	68.8	9.4	18.8	0.0	3.1	100.0
2011	2,710	55	2.0	34.5	36.4	16.4	10.9	1.8	100.0
2012	2,865	42	1.5	38.1	38.1	11.9	11.9	0.0	100.0
2013	2,068	33	1.6	39.4	18.2	15.2	27.3	0.0	100.0
전체	27,966	404	1.4	60.9	20.5	9.2	8.4	1.0	100.0

자료: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 p. 92에서 인용

- 감면사유별로 보면, 앞서 <표 III-4>의 감면실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 및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하고는 승인받은 기업이 거의 없음
- 평균적으로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이 60%를 차지하고,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이 2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 9%, 경제자유구역이 8%를 차지함
-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입주기업이 대부분이며, 아주 소수(총 3개)만 개발사업자로서 감면승인을 받았음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특징, 장기적 발전방향

가.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의 특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특징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외국인투자자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내국인이 유사한 내용의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함
 - 이와 같은 역차별은 내국인의 투자, 특히 고도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최기호(2014), 강성태·전병욱(2012), 전태용·변용환(2010), 이성봉(2010), 안종석·최준욱(2003) 등이 이 문제를 지적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매우 복잡하며, 다양함
 -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 외에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제주도 투자진흥지구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며, 각각 업종별 규모별 지원조건이 달라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안종석·최기호·정재호(2014)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외국인투자 기업에 세무자문을 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를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⁵⁾
 - “외국인투자 지원세제와 관련한 세법규정들은 명백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외국인투자기업 세무담당자 평균 2.29점(5점 만점), 세무전문가의 경우 2.25점으로 보통 수준을 의미하는 3점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
 - “외국인투자 지원세제를 적용받기 위한 세법상 제반 절차는 간편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외국인투자기업 세무담당자 평균 2.26점, 세무전문가 평균 2.25점으로 역시 보통수준 3점보다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음
- 다양한 조세지원제도 중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조세지원은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과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⁶⁾
 - 2014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실적을 보면, 증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제외한 감면 총액에서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68.5%이고, 외국인투자 지역에 대한 조세지원이 29.1%로, 합해서 97.6%를 차지함
 - 그 외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였고, 기타 다양한 조세감면은 실적이 거의 없었음
-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혜택을 받는 기업은 극소수임
 - 2014년의 경우 외투기업 중 116개 기업이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법인세 과세를 신고한 외국인투자기업 8,002개의 1.45%에 해당함⁷⁾
-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등이 오래 전에 도입된 이후 큰 변화 없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국가경제 발전전략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5)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 p.175, 197

6) 앞의 <표 III-4> 참조

7) 앞의 <표 III-3> 참조

-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의 대상 기술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며,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대상 업종을 고시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이성봉, 2010)
- 주로 투자규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고용 증대, R&D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최근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BEPS 프로젝트의 권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는 BEPS 프로젝트의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BEPS 프로젝트의 Action 5에서는 유해조세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각국이 조세특례(preferential tax regime)를 제공할 때 실질적 활동(substantial activity)을 요구하는 nexus approach를 적용할 것을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으로 요구함⁸⁾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국내에서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므로 Action 5에서 이야기하는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음

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의 장기 발전방향

-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장기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함⁹⁾
 - 내·외국인 차별 폐지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서비스업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편
 -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정비
 - 특정지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개편

8) OECD/G20 BEPS Project(2015)

9)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 pp.269~275

- 조세지원을 함에 있어 내국인의 투자와 외국인의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원대상기업의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과세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동일한 투자에 대해 내국인 투자를 외국인 투자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제적으로 외국인에게만 주어지는 조세지원 혜택을 부당한 조세경쟁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찾을 수 없음

-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지원은 1980년대에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입품을 대체해야 한다는 수입대체 필요성을 바탕으로 도입된 제도임
 - 그 후 고도기술과 관련된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산업지원서비스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러한 지원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됨
 - 현재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1980년대 도입 당시의 정책목적이 아직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 지원대상 사업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에 유사한 수준의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고 외국인투자에 동반하여 도입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 이러한 의문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히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입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의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의미 있는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임
 -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급하게 외국자본의 유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금융부문을 포함하여 그동안 금지하였던 서비스업 부문에의 투자, M&A형 투자 등을 허용하고 대규모 투자 지원제도인 외국인투자지역제도를 도입하였음
 - 그러나 국내에도 실물부문에 투자되지 않고 있는 여유 자본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세금을 감면해가면서 대규모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 현재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 입주업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기업도시 개발구역 입주업체, 기업도시 개발사업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업체,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 새만금 사업지역 입주업체,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사업자 지원이 이에 해당됨
 -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100% 감면, 추가 2년간 50% 감면의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감면 실적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한편, 외국인에 대한 특혜만으로 특정 지역의 개발·발전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동등한 지원 요구가 강함

IV.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 현황

1.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

가. 지원 조건과 지원 내용, 절차 등

-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규정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의미함
 -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받음
 - 설립 이후 5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받음
 - 그 외에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됨
 -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본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도 5년간 감면됨
- 지원대상이 되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사업을 의미함(「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 고도기술수반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은 기획재정부 고시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규정」의 <별표 1>에 고시됨
 - 2016년 6월 현재 고도기술사업은 9개 분야 117개 부문의 497개 사업이 고시되고, 산업지원서비스업은 10개 분야 48개 부문의 153개 사업이 고시되어 있음
- 고도기술 등에 대한 외투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고시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내에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 해당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 감면결정 절차를 보면, 고도기술 등에 대한 외투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에 접수되며, 대외경제총괄과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 감면규정」에 명시된 해당 기술의 소관부처에 검토를 요청함
 - 해당 부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산업파급 효과, 기술의 진부화 정도 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그 검토의견을 토대로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함
 - 소관부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요청을 받을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과 그 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비감면 사업을 구분 경리하여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고도기술수반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비감면사업에서 생산되는 최종재의 중간재가 되는 경우에는 공정별로 감면대상 공정과 비감면공정에 귀속되는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나. 지원대상 사업의 고시

- 2016년 6월 현재 고도기술사업은 9개 분야 117개 부문의 497개 사업이 고시되고, 산업지원서비스업은 10개 분야 48개 부문의 153개 사업이 고시되어 있음
-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경우 ‘전자, 정보 및 전기분야’ 17개 부문 92개 기술, ‘정밀기계, 신공정분야’ 26개 부문 71개 기술, ‘재료, 소재분야’ 15개 부문 77개 기술, ‘항공, 우주, 수송분야’ 14개 부문 55개 기술, ‘환경, 에너지 및 자원분야’ 15개 부문 95개 기술 등이 고시됨
-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분야’가 12개 부문 37개 사업이 고시되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건설, 사회기반시설분야’ 2개 부문 28개 사업, ‘기타 산업지원서비스업’ 9개 부문 22개 사업 등이 고시됨

〈표 IV-1〉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분야별 고시된 기술 수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분야	부문	기술	분야	부문	기술
1. 전자, 정보 및 전기분야	17	92	1. 전자, 정보 및 전기분야	4	17
2. 정밀기계, 신공정분야	26	71	2. 엔지니어링 서비스	1	11
3. 재료, 소재분야	15	77	3. 어업 관련 분야	2	3
4. 신물질, 정밀화학, 생물	19	47	4. 신물질, 정밀화학, 생물	5	12
5. 광학, 의료기기 분야	4	15	5. 광학, 의료기기 분야	1	2
6. 항공, 우주, 수송분야	14	55	6. 수송분야	2	3
7. 환경 에너지 및 자원	15	95	7. 환경 에너지 및 자원	8	18
8. 건설, 사회기반시설분야	3	25	8. 건설, 사회기반시설분야	2	28
9. 식품분야	4	20	9. 디지털 콘텐츠 사업분야	12	37
			10. 기타 산업지원서비스업	9	22
전체	117	497	전체	48	153

자료: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규정」, 〈별표 1〉

- 현재 고시된 목록은 2015년 1월에 목록이 정비되어 고시된 것이며, 그 이전에는 2012년 12월에 목록이 정비되었음
 - <표 IV-2>에서는 2008년 이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규정」을 개정하여 고시 목록을 정비한 내역을 정리하였음
 - 대체로 2년을 주기로 목록의 정비가 진행되며, 일부 기술은 삭제되고, 일부 기술은 추가되거나 명칭이 수정됨
 - 2008년 개정 이후, 2010년 10월, 2012년 12월, 2014년 1월에 개정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 최근에는 추가되는 기술보다 삭제되는 기술이 더 많음
 - 2012년 12월의 개정에서는 86개 기술이 삭제되고, 33개 기술이 추가되었으며, 2015년 1월에는 78개 기술이 삭제되고 52개 기술이 추가되었음
 - 한편, 2010년에는 추가된 기술이 더 많았고, 2008년에는 추가된 기술과 삭제된 기술이 각각 8개와 9개로 유사한 수준이었음

<표 IV-2>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고시 목록 개정 연혁

개정시기	주요 내용	
2015. 1	52개 기술 추가	항공우주, 재료소재, 전자·정보, 의료기기, 식품분야 등
	78개 기술 삭제	재료소재, 식품, 자원개발 분야 등
	일부기술 명칭 수정	
2012. 12	33개 기술 추가	의료용 로봇, Big data 처리기술,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게임 기술 등
	86개 기술 삭제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고도기술로 보기 힘든 기술
2010. 10	49개 기술 추가	연료전지 보조장치, 리튬이온 전지 셀 소재 및 응용, 식품소재 기술 등
	9개 기술 삭제	
2008. 8	8개 기술 추가	나노섬유, 대체물질 개발 및 응용기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술 등
	9개 기술 삭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규정 개정연혁」, 2016. 6. 3 접속

□ 2015년 1월에 고시된 기술목록 개정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음

- 지원이 필요한 52개 첨단기술을 추가함
 - 고도기술수반사업 : 항공·우주, 재료소재, 전자·정보, 의료기기, 식품분야 등에서 51개 기술 추가
 - 산업지원서비스업 : 국제석유거래업 1건 추가
- 기술발전에 따라 보편화·진부화된 79개 기술을 삭제함(고시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적용)
 - 고도기술수반사업 : 재료소재, 식품, 자원개발 분야 등에서 78개 기술 삭제
 - 산업지원서비스업 : 자원개발분야의 1개 기술 삭제
- 현재 기술 환경 등을 반영하여 기술명칭 등 수정

2.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 실적과 주요 지원분야

가.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 실적

- <표 IV-3>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출세액과, 외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실적, 고도기술 등 감면실적을 정리하였음
- A행은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인투자 기업 전체 기업 수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한 산출세액을 정리한 것이며,
- B행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수와 감면액을 정리한 것임
- C행은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 기업 중 증자 감면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것임
 - 증자 감면의 경우 감면 항목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증자 감면을 제외한 감면을 기준으로 고도기술 등 감면의 비중을 살펴보는데 이 행의 목적이 있음
 - 기업수의 경우 단순히 감면기업 수에서 증자 감면 기업 수를 차감한 것으로 신규투자 감면과 증자 감면에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표에 나타난 수치보다 기업수가 더 많을 수 있음

- D행은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의 적용을 받은 기업수와 감면세액을 정리한 것임
 - B/A는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에서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비중(기업수)과 외국인투자기업이 납부하는 세액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산출, 감면세액)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D/C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증자 감면 제외) 중에서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정리한 것임
- 외투법인 중에서 외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내외임
- 2012년 1.8%, 2013년 1.7%, 2014년 1.4%로 감면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를 보임
 - 외투기업 중 감면을 받은 기업의 수가 적어서, 아주 소수의 기업만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감면규모는 외국인투자기업 전체 산출세액의 5% 내외 규모임
- 2012년 5%, 2013년 5.9%, 2014년 4.3%
 - 감면액의 산출세액 대비 비율이 감면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상당히 큰데, 이는 소수의 기업이 비교적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시사함

〈표 IV-3〉 외투기업 산출세액과 감면세액

(단위: 개, 백만원, %)

	2012		2013		2014	
	기업수	산출, 감면 세액 ¹⁾	기업수	산출, 감면 세액 ¹⁾	기업수	산출, 감면 세액 ¹⁾
외투기업 전체 (A)	7,699	8,755,200	7,931	6,087,794	8,002	5,561,935
감면기업(전체) (B)	141	438,378	134	361,605	116	236,499
증자 감면	28	217,570	27	202,296	18	56,496
감면(증자 제외)(C)	113	220,808	107	159,309	98	180,003
고도기술 등 (D)	75	140,827	71	115,629	63	123,318
B/A	1.8	5.0	1.7	5.9	1.4	4.3
D/C	66.4	63.8	66.4	72.6	64.3	68.5

주: 1) 외투기업 전체의 경우에는 산출세액,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세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표 12-2-1~3.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중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이 차지하는 비중(D/C)은 기업수를 기준으로 65% 내외이며, 감면액 기준으로는 70% 내외임
 - 기업수 기준 2012년 66.4%, 2013년 66.4%, 2014년 64.3%
 - 감면액 기준 2012년 63.8%, 2013년 72.6%, 2014년 68.5%

-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모는 2012년 4,384억원에서 2013년 3,616억원, 2014년 2,365억원으로 2013년과 2014년에 전년대비 17.5%, 34.6% 축소됨
 -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도 2013년에는 1,156억원으로 2012년의 1,408억원 대비 17.9% 축소되었으나, 2014년에는 1,233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6.7% 증가하였음

나. 주요 지원분야

-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에서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 대상 기업의 주요 지원분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¹⁰⁾

- <표 IV-4>에서는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감면승인을 받은 기업의 업종별 구성을 정리하였음
 - 2005~2013년의 기간 동안 총 246개의 기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감면 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 87%인 214개가 고도기술수반사업이고, 13%인 32개가 산업지원서비스업임
 - 고시된 사업의 목록은 고도기술수반사업 497개 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153개 사업으로 합하여 650개 사업임

10)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 pp.92~96.

- 고도기술수반사업 9개 분야 중 1개 분야와 산업지원서비스업 10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는 2005~2013년의 8년 동인 감면승인을 받은 기업이 없음
 -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식품분야
 -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어업 관련 분야, 광학·의료기기 분야, 수송분야, 환경·에너지 및 자원분야, 건설·사회기반시설 분야

- 고도기술수반사업 9개 분야 중 2개 분야와 산업지원서비스업 10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이 기간에 감면승인을 받은 기업은 각각 1~4개로 감면승인을 받은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1.6%임
 -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광학·의료기기 분야, 건설·사회기반시설 분야
 -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신물질·정밀화학·생물산업, 디지털 콘텐츠 사업

- 고도기술수반사업 중에서는 전자, 정보 및 전기분야가 85개로 총 246개의 34.6%를 차지하였음
 - 그 외에 재료·소재분야가 34개로 13.8%, 항공·수송분야가 33개로 13.8%와 13.4%를 차지하였음
 - 그 다음은 정밀기계·신공정분야, 환경·에너지·자원분야, 신물질·정밀화학·생물산업의 순임

〈표 IV-4〉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감면기업 업종별 구분(2005~2013년)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업종구분	업체수	비중	업종구분	업체수	비중
전자, 정보 및 전기분야	85	34.6	전자, 정보 및 전기분야	10	4.1
			디지털 콘텐츠 사업	4	1.6
정밀기계, 신공정	21	8.5			
재료, 소재	34	13.8			
신물질, 정밀화학, 생물산업	17	6.9	신물질, 정밀화학, 생물산업	4	1.6
광학, 의료기기 분야	2	0.8			
항공, 수송분야	33	13.4			
환경, 에너지, 자원	19	7.7			
건설, 사회기반시설	1	0.4			
			엔지니어링 서비스	4	1.6
			기타 산업지원서비스	10	4.1
미분류	2	0.8			
소계	214	87.0	소계	32	13.0
합계				246	100.0

자료: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 p.93

- 산업지원서비스업 중에서는 전자, 정보 및 전기분야와 기타 산업지원서비스분야가 각각 10개로 4.1%씩을 차지함
 - 기타 산업지원서비스 분야에서는 주로 연구개발업과 교육훈련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감면승인을 받았음
 - 산업지원서비스업에서 감면승인을 받은 기업의 대부분은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임
 - 예, 관련 시설의 임대·유지·보수, 관련 종사자 교육, 관련 기술의 제공,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3. 첨단 기술에 대한 국내 다른 조세지원제도

- 국내 조세지원제도 중 첨단 기술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써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지원이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는 당해연도에 지불한 비용의 20%를 세액공제 함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지원대상 기술과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지원대상 기술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별표 7>과 <별표 8>에서 규정함
- <표 IV-5>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원대상기술 지정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는데, 12개 신성장동력산업에 76개의 기술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술로 고시되었음
 - 신성장동력산업에는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신소재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콘텐츠 소프트웨어, 탄소저감에너지, 고부가가치식품산업, 고도물처리산업, IT 융합, 첨단소재가공시스템이 포함됨
 - 각 산업분야별로 2~16개의 기술이 지원대상으로 지정됨
 - IT융합 부문이 16개로 지원대상 기술이 가장 많고, 콘텐츠 소프트웨어산업 11개, 신재생에너지산업 10개, LED 응용산업 9개, 바이오제약·의료기기산업 8개, 로봇 응용산업 6개, 신소재·나노 융합산업 5개 등임
- <표 IV-6>에서는 원천기술 중 지원대상 기술을 정리하였는데, 17개 산업분야에 50개 기술이 지원대상으로 고시됨
 - 금속, 생산기반, 섬유, 에너지효율향상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각 분야별로 1~5개의 기술이 고시됨
 - 금속분야와 원자력분야, 디스플레이 분야에 고시된 기술이 각각 5개씩으로 가장 많으며, 섬유, 화학공정, 화합물·의약품 분야에는 각각 4개의 기술이 지원대상으로 고시됨

〈표 IV-5〉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지원대상기술 요약

구분	분야	기술수
1. LED 응용	가. 에코 LED	7
	나. 삭제 <2016.2.5.>	
	다. LED 감성/월빙 조명	2
2.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	2
3. 로봇응용	가. 청정생산용 첨단제조 로봇시스템	2
	나. 지속가능 사회안전 로봇시스템	2
	다. 라이프케어 로봇	1
	라. 에듀테인먼트 로봇	1
4.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가. 바이오 의약품	5
	나. 첨단 의료기기	2
	다. 스마트 헬스케어	1
5. 신소재나노융합	가.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1
	나. 기능성 나노필름	2
	다. 신소재	2
6. 신재생에너지	가. 태양전지	3
	나. 연료전지	1
	다. 청정석탄에너지	1
	라. 폐기물 에너지	1
	마. 풍력에너지	2
	바. 지열에너지	2
7. 콘텐츠 소프트웨어	가. 임베디드·시스템 소프트웨어	4
	나. 지능형 인터페이스	2
	다. 입체 영상·홀로그래피	3
	라. 문화콘텐츠	2
8. 탄소저감에너지	CCS (Carbon Capture & Storage, 탄소포집 저장)	4
9. 고부가식품산업	가. 친환경 안심식품	1
	나. 기능성 식품	1
10. 고도물처리산업	상수관리 최적화	1
11. IT융합	가. 스마트 자동차	5
	나. 디지털 선박/조선	2
	다. 지능형 그린건설	2
	라. 지식기반 생산시스템	1
	마. 공통 핵심부품	1
	바. 착용형 스마트 기기	2
	사. 지능형 사물인터넷	1
	아. 지능형 무인항공기	1
	자. 스마트팜	1
12. 첨단소재가공시스템	가. 복합재 가공시스템	1
	나. 메탈 가공시스템	1
전체		76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표 IV-6〉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요약

구 분	분 야	기술수
1. 금속	가. Smart Metal (스마트 금속)	1
	나. Green Process (친환경 공정)	2
	다. Energy Metal (에너지 금속)	2
2. 생산기반	가. 임계성능 생산기반	1
	나. 그린에너지 생산기반	2
3. 섬유	가. 건강복지 섬유	1
	나. 녹색환경 섬유	1
	다. 생각하는 섬유	1
	라. 융복합섬유	1
4. 에너지효율향상	가. 연료전지소재	1
	나. 이차전지	1
5. 삭제 (2016.2.5.)		
6. 자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2
7. 전력	가. 지능형전력계통 (Smart Grid)	1
	나. 지능형 배전기술	1
8. 원자력	가.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기술	1
	나. 원자력 재료	1
	다. 방사선 이용	1
	라. 신형원전(Advanced Power Reactor)	1
	마. 가압경수형 원전(Pressurized Water Reactor)	1
9. 지식정보보안	공통기반 보호	2
10. 청정기반	가. 유니소재	1
	나. 그린프린팅 제품	1
	다. 자원순환	1
11. 화학공정	가. 녹색 화학공정	3
	나. 인간친화성 소재	1
12. RFID-USN ¹⁾	가. Smart(지능형) 에너지관리	1
	나. Smart(지능형) Supply Chain(공급망 관리)	1
13. U(유비쿼터스) -컴퓨팅	가. 휴먼컴퓨팅	1
	나. 클라우드 컴퓨팅	1
14. 화합물 의약품	가. 혁신형 신약후보 물질	3
	나. 혁신형 개량신약	1
15. 우주	인공위성	2
	우주발사체	1
16. 디스플레이	가.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1
	나. 차세대 신공정 핵심장비 개발	1
	다. 신공정 핵심소재 개발	2
	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1
17. 반도체	반도체 소재	1
18. 조선	고부가가치선박	1
전체		50

주: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8〉

4. 주요 외국의 유사한 제도¹¹⁾

-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에서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조세 지원이 많은 국가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유사한 지원제도를 조사·정리하였음
- 조사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조세 지원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 국가 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지원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은 아니지만 국가별로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 지원제도, 특정 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있는데,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IV-7>과 같음
- 중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특정 업종의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음
 - 중국은 고도신기술기업, 첨단기술서비스기업, 소프트웨어와 전자회로산업 등에 대해 조세지원을 함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인접국으로서 유사한 업종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한편, 대만은 2009년에 특정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촉진산업승급조례)를 폐지하고 2010년부터는 법인세 인하와 함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음
 - 19년간 지속하던 촉진산업승급조례를 2009년에 폐지하고 산업혁신조례를 제정함
 - 동시에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인하하였음

11) 주요 외국의 지원제도는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의 '주요 외국의 지원제도 요약' 부분(pp. 66~69)의 내용 중 관련되는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옮긴 것임

-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 외국인투자, 그리고 첨단기술 산업에 집중되던 조세 지원혜택에서 탈피하여 주변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대만으로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만의 모든 기업들에 대해 2019년까지 적용됨

〈표 IV-7〉 동남아 주요국의 특정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중국	대만 (조세지원제도 폐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① 고도신기술기업(HNTE)에 대한 지원 ② 첨단기술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 ③ 소프트웨어와 전자회로 산업에 대한 지원	① 신흥·주요·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우대조치	① 제조업 및 서비스업 - 개척자 기업: 제조업 - 개척자서비스 기업: 서비스업 - 개발확장 인센티브	① 개척자 기업 ② 투자소득 공제를 받는 권장활동 수행기업 ③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
④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지원	② 사회기반시설 사업 ③ 생명공학과 제약산업		④ 생명공학산업 ⑤ 운영총괄본부
⑤ 농·임·축산·어업에 대한 지원 ⑥ 환경보호, 물 또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⑦ 증권투자펀드 ⑧ 소형기업 ⑨ 첨단기술서비스기업		② 운영총괄본부 ③ 금융허브 ④ 국제법률서비스 허브	⑥ 국제조달센터 및 지역물류 센터

자료 :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 p. 68에서 재인용

-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의 경우, 그 국가의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기업들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제공함
 - 중국은 고도신기술기업(HNTE), 첨단기술서비스기업, 소프트웨어와 전자회로 기업 등에 대해 조세지원을 제공함
 - 대만의 경우에는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촉진산업등급조례에 의해 신흥·주요·전략 산업 등에 대해 조세지원을 제공하였음
 - 싱가포르의 금융산업분야, 개척자 기업 및 개척자서비스기업 등에 대해 조세지원을 제공함
 - 말레이시아의 경우 개척자 기업을 포함하여, 권장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권장제품을 제조하는 기업과 승인받은 서비스 프로젝트 수행 기업, 그리고 생명공학기업 등에 대해 조세지원을 제공함

- 이처럼 특정업종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차별적인 조세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없었음
 - 중국은 1979년 개방정책 이후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으로 구분하여 이원적인 조세체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2007년 3월 기업소득세법(EITL)의 개정으로 내·외자기업 간의 차별을 폐지하였음

- 특정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은 대부분 일정 기간 동안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투자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을 적용함
 -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5+2 또는 3+2 제도처럼 2+3 또는 3+3의 제도를 운영함
 -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개척자 기업의 직접투자에 대하여 5년에서 15년 동안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개척자 상태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수입규모와 무관하게 최장 20년까지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
 -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개척자 기업에 대해 5년~10년 동안 세금을 부분 또는 완전 면제하고, 적격 자본 지출에 대해 5년~10년 동안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V.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1.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문제점

-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제도임
 -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문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전반의 문제이지만, 그 조세지원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 내국인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고시된 사업의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공동투자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음
 - 이는 내국인의 기술개발 및 고도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둘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며,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대상 기술·업종을 고시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이성봉, 20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고시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개정 연혁을 보면 2008년 이후 예외 없이 2년에 한 번씩 개정됨
 - 개정할 때마다 일부 기술이 추가되고, 또 일부 기술이 삭제되긴 하지만 600개가 넘는 모든 기술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새로운 기술은 적절히 추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 매우 좁은 범위의 특정한 사업·기술을 고시하고 있어 새로 생성된 기술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고시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여 거의 고시된 기술·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조세지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신청기술 소관부처의 검토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검토가 어렵고, 규정상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장시간이 소요됨¹²⁾

- 참고로 고도기술 등으로 지정된 기술의 변화를 보면, 1999년에는 533개 기술이 지정되었는데, 2015년에 650개로 늘어남
 - 2년에 한 번 정도 기술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는데, 고시된 기술 전체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하지 못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기술도 계속해서 감면대상에 잔류하는 경향이 있음
 -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99년에 고시된 기술 중 2015년까지 잔류하고 있는 기술이 392건임
 - 즉, 2015년에 고시된 기술 중 60% 정도가 16년 동안 변화 없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 셋째,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의 특별한 전략이 없이 업종을 불문하고 고도기술에 초점을 맞춰 지정을 하여, 분야가 광범위하고 지정된 기술의 수가 많으며, 다른 정책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임
 - 2005~2013년의 기간 동안 총 246개의 업체(연평균 31개)가 감면 승인을 받았으며, 감면 혜택을 받는 업체가 매년 70개 내외인데 비해 총 19개 분야(고도기술수반사업 9개 분야, 산업지원서비스업 10개 분야)의 650개 사업·기술이 지정됨¹³⁾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 제1항

13) 앞의 <표 1>, <표 3>, <표 4> 참조.

- 지원실적은 ‘전자, 정보 및 전기분야’, ‘재료, 소재분야’, ‘항공, 수송분야’, ‘정밀 기계, 신공정분야’, ‘환경, 에너지, 자원분야’, ‘신물질, 정밀화학, 생물산업 분야’, ‘기타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집중되고, 다른 분야에는 지원 실적이 없거나 아주 소수의 업체만 감면 혜택을 받았음
- 조세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광범위한 지원대상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고도기술 등에 대한 외투감면 대상 기술과 국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지원대상 기술 지정분야를 비교하면 <표 V-1>과 같음
- 신성장산업과 원천기술의 지원대상은 고도기술 중 지원실적이 많은 소수의 분야에 집중되는데 비해, 외투감면 대상이 되는 고도기술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함

〈표 V-1〉 첨단기술 고시 내용의 비교 - 분야와 기술 수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1. 전자, 정보 및 전기	92+17	1. LED 응용	7	2. 생산기반	2
2. 디지털 콘텐츠 사업	37	7. 콘텐츠 소프트웨어	11	9. 지식정보보안	2
		11. IT융합	16	10. 청정기반	1
				12. RFID-USN	2
				13. U-컴퓨팅	2
				16. 디스플레이	5
				17. 반도체	1
3. 정밀기계, 신공정	71	3. 로봇응용	6		
4. 재료, 소재	77	5. 신소재나노융합	5	1. 금속	5
		12. 첨단소재가공 시스템	2	3. 섬유	4
				10. 청정기반	2
5. 신물질, 정밀화학, 생물산업	47+12	4. 바이오제약·의료기기	8	11. 화학공정	4
				14. 화합물의약품	4
6. 광학, 의료기기	15+2				
7. 항공, 우주, 수송	55+3	2. 그린수송시스템	2	15. 우주	3
				18. 조선	1
8. 환경 에너지 및 자원	95+18	6. 신재생에너지	10	2. 생산기반	1
		8. 탄소저감에너지	4	4. 에너지효율향상	2
		10. 고도물처리산업	1	6. 자원	2
				7. 전력	2
				8. 원자력	5
9. 건설, 사회기반시설	25+28				
10. 식품	20	9. 고부가식품산업	2		
11. 엔지니어링 서비스	11				
12. 어업 관련 분야	3				
14. 기타 산업지원 서비스업	22				
전체 (497+153)	650	전체	76	전체	50

주: 1)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 (a)+(b)의 형태로 표시된 것은 앞의 것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뒤의 것은 산업지원서비스업, 음영표시한 부분은 산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함
 자료: 〈표 IV-1〉, 〈표 IV-5〉, 〈표 IV-6〉

- 한편 지원규모를 보면, 연구·인력개발비 지원의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투자 비용의 20%를 세액에서 공제하는데 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은 5년간 세액 전액, 그 후 2년간 20%이며, 감면한도는 투자액의 90%로서 감면규모가 상당히 큼¹⁴⁾
- 넷째, 고도기술 등에 대한 외투감면의 경우 다른 조세지원과 달리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한다는 것 외에 투자규모나 고용조건, 투자지역에 대한 조건이 없음
 - 단, 조세감면 한도는 감면기간 모두 합해서 외국인투자 규모의 90%인데, 그 중 40% 포인트는 고용 조건을 만족시켜야 받을 수 있음
 - 고용기준 한도는 상시근로자수와,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 청년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근로자수에 의해 결정됨
 - 한편 다른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는 투자지역, 업종, 투자규모 등에 제약이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 다섯째, 감면소득을 고도기술 등을 수반한 사업의 소득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산정하기 위한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평가됨
 - 중간재 생산단계에서 고도기술이 사용되는 경우, 중간재의 최종재에 대한 기여도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불확실성이 큼
 - 실무상 최종재의 소득을 중간재와 최종재의 원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중간재가 별도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중간재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기도 함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4항

2.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개편방안

- 앞서 검토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은 첫째, 특별한 원칙 없이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산업정책적인 측면, 다른 조세지원제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택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지원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와 같이 신성장동력산업의 첨단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이 경우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이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어떤 기업이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임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조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조건을 연계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술 선정의 역량이 제고되어 일관성 있고 신속한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이러한 개편과 함께 지원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원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정의하면 특정 기술과 연계된 사업을 분리 산정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기술에 대한 조건 외에 투자규모, 고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① 외국인투자지역제도나 다른 외투법인 지원제도와 같이 업종별 투자규모, 고용규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 ② 기술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심의하여 그때그때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음

□ 위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음

- 제도의 투명성, 간편성 등의 관점에서는 투자규모, 고용규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①번이 우월함
- 한편, ①의 문제점은 투자규모 등의 조건을 결정하기에 따라 지원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무의미한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기술 등에 대한 조건을 강하게 부여한 상태에서 투자규모, 고용규모 등에 대해 강하게 제약을 하면, 외국의 선진기술을 국내에 들여와 시너지효과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투자요건, 고용요건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규정하여 최소한의 요건으로서의 의미를 갖도록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크게 의미 있는 제한은 되지 못할 것임
- ②번과 같이 심의하여 선정하는 방안은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자칫하면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심의에서 임의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심의회 운영규정 등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참고문헌

강성태·전병욱,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비조세변수의 영향」, 『회계저널』, 제21권, 제6호, 2012, pp.163~18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안중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15.

안중석·정재호·최기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평가 및 정비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안중석·최준욱,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성과 및 향후 운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8.

이성봉,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상논총』, 제28권 1호, 2010, pp.97~119.

전태영·변용환,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무학연구』, 제27권 제4호, 2010, pp.115~136.

최기호,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4.

Zao, James and Victor Chang, “Transfer Pricing and ‘High and New Technology Enterprises’ in China: What you need to know”, Tax Analysis Issue P193/2014, Deloitte, 10 July 2014.

OECD/G20 BEPS Project, *Executive Summaries: 2015 Final Reports*, OECD, 2015

